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예정지역 기업 우대 >

■ 윤한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642호)

2024.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예정지역 기업 우대 근거 마련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한홍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8. 8.

3. 회 부 일 : 2024. 8.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공항 건설 및 혁신도시 조성 등과 같이 대규모 국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해당 사업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 국책 사업인 신항만 건설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본력과 기술력이 우세한 대기업 위주의 계약 입찰 참여로 지역기업이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항만 건설과 관련하여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6 신설).

Ⅲ. 검토의견

1. 예정지역 기업 우대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취지

- ☐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가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예정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자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1조의6(예정지역 기업의 우대) <u>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예정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u>

나. 검토의견

- ☐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대규모 국책사업인 신항만 건설의 경우 현행법에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본력과 기술력이 우세한 대기업 위주의 계약 입찰 참여로 지역

기업이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 바,

이에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체결 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신항만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지정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함)¹⁾의 관할 또는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업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효과를 제고하려는 취지임.

- 신항만은 수출입화물 등의 원활한 수송, 항만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항만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되는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고 있는데, 현재 부산항신항·진해신항, 광양항, 인천신항, 평택·당진항 등 총 12개가 있으며,²⁾ 현재 12개의 신항만에 예정지역이 고시되어 있음.³⁾

□ 입법례를 보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⁵⁾,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

1)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예정지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항만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역(水域) 및 지역을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2) 참고자료 1, [신항만의 항만법상 분류 현황], p.7

3) 참고자료 2,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p.8

4)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2조(지역기업의 우대) 제18조(지역기업의 우대)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한 법률」⁶⁾ 등 지원법의 성격을 지닌 법률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나 주변 지역 피해보전 등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해당 사업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예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이를 신항만 건설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데에 입법목적이 있음.

- 그런데, 현재 해양수산부가 실시하고 있는 신항만개발사업의 도급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신항만별로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⁷⁾로 계약을 맺은 도급업체에는 다수의 지역업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제45조의5(지역기업의 우대) 이천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의2제2항제3호의 이천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지역기업의 우대) 제17조의2(지역기업의 우대) 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7)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정의) ①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대안”이라 함은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공종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해당실시설계서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한다)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
4. “대안입찰”이라 함은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제3호의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5. “일괄입찰”이라 함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을 말한다.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 체결시 예정지역의 관할뿐만 아니라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에게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그 우대대상을 구체화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경우 지역기업을 우대하려는 개정안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으며 공정한 계약 체결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 개정안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공사·물품·용품 등의 계약 체결 시 예정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자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19

참고 1

신항만의 항만법상 분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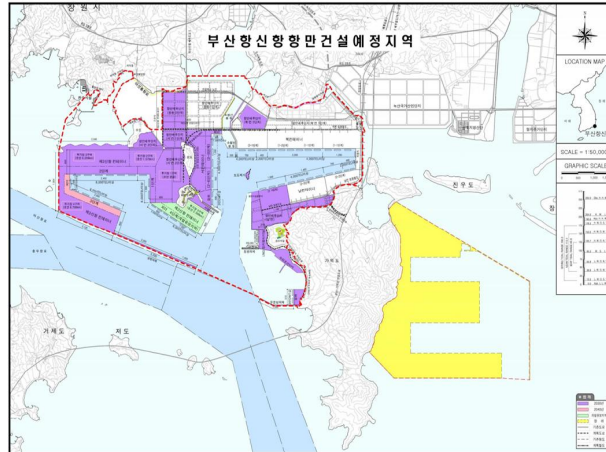
신항만	항만법 상 구분	관리주체	항만 성격
부산항신항·진해신항	부산항	국가관리	무역항
광양항	광양항	국가관리	무역항
인천북항	인천항	국가관리	무역항
인천신항			
평택·당진항	평택·당진항	국가관리	무역항
보령신항	보령항	지방관리	무역항
새만금신항	-	-	-
목포신항	목포항	국가관리	무역항
울산신항	울산항	국가관리	무역항
포항영일만항	포항항	국가관리	무역항
동해신항	동해·묵호항	국가관리	무역항
제주신항	제주항	지방관리	무역항

※ 해양수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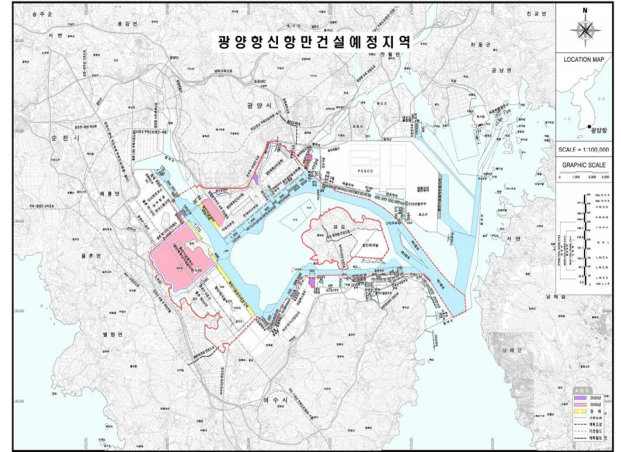
참고 2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기준, '19.8)

부산항 신항 · 진해신항 신항만건설예정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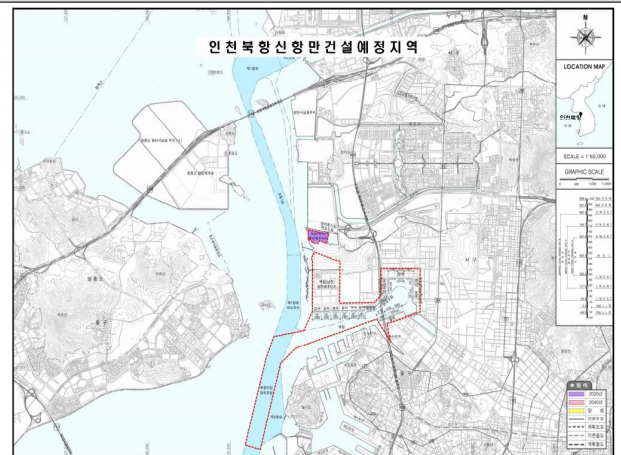
광양항 신항만건설예정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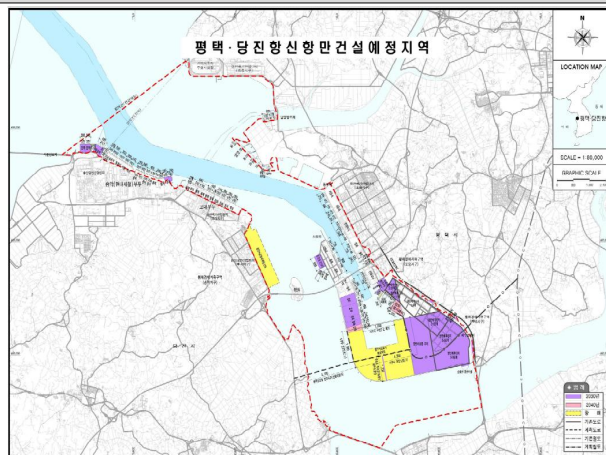
인천신항 신항만건설예정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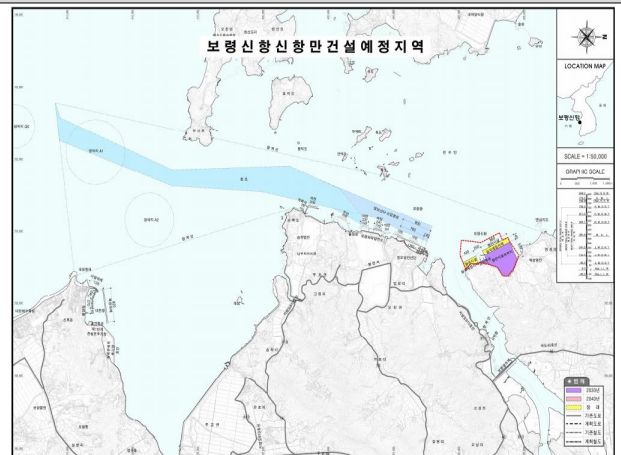
인천북항 신항만건설예정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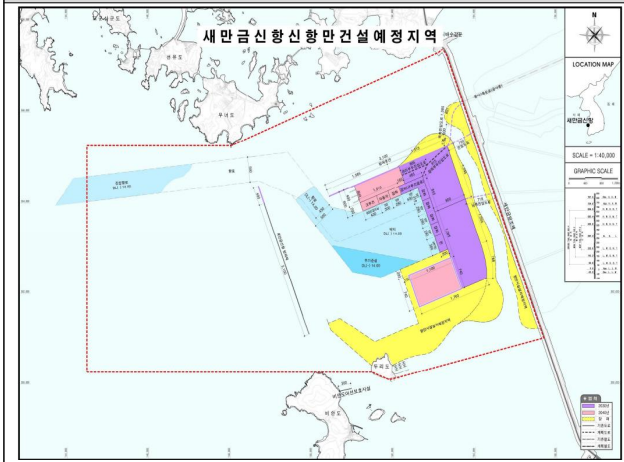
평택 · 당진항 신항만건설예정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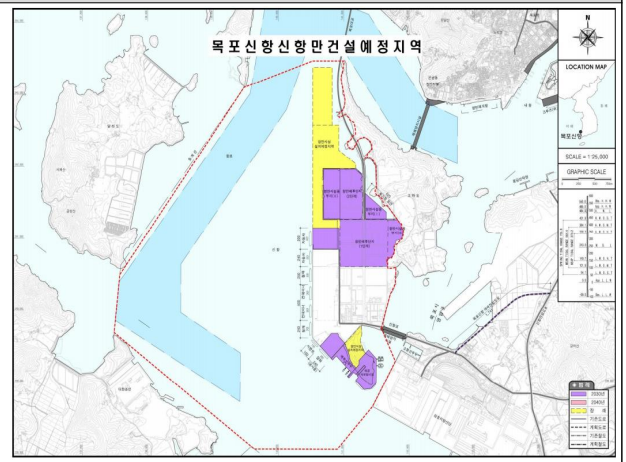
보령신항 신항만건설예정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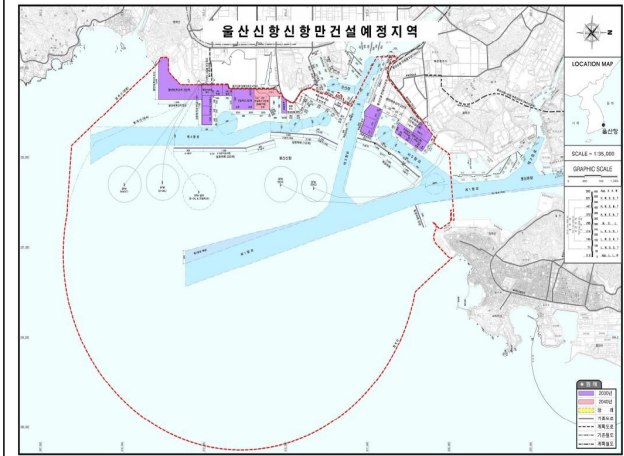
새만금신항 신항만건설예정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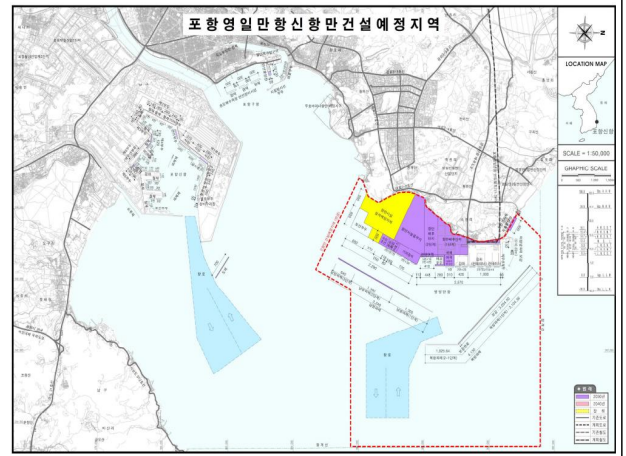
목포신항 신항만건설예정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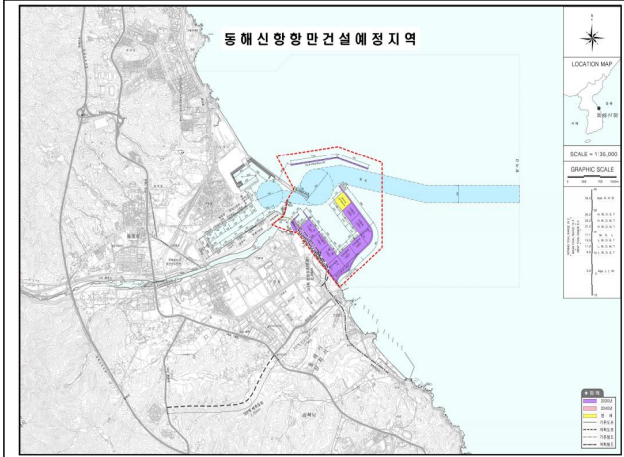
울산신항 신항만건설예정지역



포항영일만항 신항만건설예정지역



동해신항 신항만건설예정지역



제주신항 신항만건설예정지역



※ 해양수산부